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202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관리국)

2025.11.24.

전문위원 송 세 창

## 1. 제안이유

- 2025년 11월 1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세입	3,495,990	3,390,215	105,775	3.12%	증가
세출	20,585,476	21,902,657	△1,317,181	△6.01%	감소

- 도시관리국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대비 **3.12%(1억 578만원)** 증가한 일반회계 25억 9,846만원, 특별회계 8억 9,753만원, **총 34억 9,599만원**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6.01%(△13억 1,718만원)** 감소한 일반회계 200억 3,276만원, 특별회계 5억 5,272만원, **총 205억 8,548만원**으로 편성됨.

### 3. 세입예산(안) 현황

#### 회계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계	3,495,990	3,390,215	105,775	3.12%	증가
일반회계	2,598,459	2,414,679	183,780	7.61%	증가
특별회계	897,531	975,536	△78,005	△8.00%	감소

#### 부서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주택정책과	1,268,983	1,215,884	53,099	4.37%	증가
주거정비과	800	800	0	-	
도시계획과	0	0	0	-	
건축과	121,996	116,310	5,686	4.89%	증가
공원녹지과	1,206,680	1,081,685	124,995	11.56%	증가

#### 부서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주택정책과	420,646	415,115	5,531	1.33%	증가
주거정비과	200	200	0	-	
건축과	476,685	560,221	△83,536	△14.91%	감소

## □ 세입예산(안) 현황

-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 대비 **3.12%(1억 578만원) 증액**된 **34억 9,599만원**(일반회계 25억 9,846만원, 특별회계 8억 9,75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25억 9,846만원 중 세외수입이 14억 2,620만원(무단증축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이 11억 7,226만원(공원녹지 관리·조림·산불예방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 중 주택정책과(약 16억 8,963만원, 48.3%), 공원녹지과(약 12억 668만원, 34.5%), 건축과(약 5억 9,868만원, 17.1%) 3개 부서가 세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정비과·도시계획과의 세입 규모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임.
- 특별회계 세입 8억 9,753만원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가. 주택정책과 :

- 세입예산은 2025년 16억 3,100만원에서 2026년 **16억 8,963만원**으로 **약 5,863만원 (3.6%)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12억 6,898만원과 특별회계 세입 4억 2,065만원으로 구성됨.
- 이행강제금,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관련 과태료 등 제재성 세외수입과 공동주택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을 구성하고 있음.

나. 주거정비과 :

- 세입예산은 2025·2026년도 모두 100만원(일반회계 80만원, 특별회계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증감 없음**.(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약 0.03%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사업 재원이라기보다 상징적 성격의 세입으로 볼 수 있음.

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없으며,

라. 건축과 :

- 세입예산은 2025년 6억 7,653만원에서 2026년 **5억 9,868만원**으로 **약 △7,785만원(△11.5%)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1억 2,2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 4억 7,669만원으로 구성됨.
- 건축법·건축물관리법·승강기안전관리법·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설치 의무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제재성·목적성 수입이 대부분으로, 특별회계(건축안전·주차장) 재무활동 축소에 따른 감액이나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유지된 것으로 사료됨.

마. 공원녹지과 :

- 세입예산은 2025년 10억 8,169만원에서 2026년 **12억 668만원**으로 **약 1억 2,500만원(11.6%) 증액**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됨.
- 공원이용료·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조립·산불·병해충 방제·도시농업·정원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공원·녹지 인프라 유지·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기능함.

○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가. 주택정책과 :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025년 4억 1,512만원에서 2026년 **4억 2,065만원**으로 **553만원(1.3%) 증액**.(무단증축 이행강제금(20%),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나. 주거정비과 :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025·2026년 모두 **20만원으로 변동 없음**.  
(정비구역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소규모 이행강제금(20%) 수입)

다. 건축과 :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2025년 5억 6,022만원에서 2026년 **4억 7,669만원**으로 **8,354만원(△14.9%) 감액**.
-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3,187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20%), 순세계잉여금 등.)
- 주차장특별회계 3억 4,482만원 (부설주차장 위반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공원·녹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건축안전특별회계 수입 등 도시관리 기능과 연계된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됨.
-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상당 부분이 무단증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 제재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세입 추계와 징수 실적 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공원녹지 보조금과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각각 녹지 인프라 및 건축물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보조 사업 성과와 특별회계 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일반·특별회계) ]

(단위 : 천원)

부서	2026년 세입(계)	주요편성내역 (대표 세부사업 + 금액, '25대비 증감)
주택 정책과	1,689,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등 1,245,005, 증55,505)</li> <li>- 과태료(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관련 과태료 69,619, 전액신규 69,619)</li> <li>- 보조금(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전문가 자문 등 23,978, △2,406)</li> <li>-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 (무단증축 이행강제금(20%)·지난연도 수입 등 420,646, 증5,531)</li> </ul>
주거 정비과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800, 변동 없음)</li> <li>-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 변동 없음)</li> </ul>
도시 계획과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세입 없음('25년과 동일,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 재원)</li> </ul>
건축과	598,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121,996, 증5,686)</li> <li>-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외수입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행강제금 등 476,685, △83,536)</li> </ul>
공원 녹지과	1,206,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비·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58,400, 증2,000)</li> <li>- 보조금 (조림·숲가꾸기·산불예방 등 산림·공원 관련 국·시비 보조금 1,148,280, ▲122,995)</li> </ul>

#### 4. 세출예산(안) 현황

##### 회계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계	20,585,476	21,902,657	1,317,181	△6.01%	감소
일반회계	20,032,759	21,089,836	△1,057,077	△5.01%	감소
특별회계	552,717	812,821	△260,104	△32%	감소

##### 부서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주택정책과	2,378,510	1,997,915	380,595	19.05%	증가
주거정비과	169,799	75,033	94,766	126.30%	증가
도시계획과	455,196	694,138	△238,942	△34.42%	감소
건축과	242,175	481,218	△239,043	△49.67%	감소
공원녹지과	16,787,079	17,841,532	△1,054,453	△5.91%	감소

##### 부서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비 고
건축과	552,717	812,821	△260,104	△32%	감소

## □ 세출예산(안) 현황

- 도시관리국 2026년 세출예산(안)은 총 205억 8,548만원으로 2025년(219억 266만원) 대비 △13억 1,718만원(△6.01%) 감액 편성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0억 3,276만원(△10억 5,708만원, △5.01%), 특별회계(전액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5,272만원(△2억 6,010만원, △32%)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원녹지·건축 분야 재무활동성 경비의 축소와 일부 사업 종료·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 부서별로는 주택정책과(23억 7,851만원)·주거정비과(1억 6,980만원)가 각각 19.05% 3억 8,060만원, 126.30% 9,477만원 증액된 반면, 도시계획과(4억 5,520만원)·건축과(7억 9,489만원)·공원녹지과(167억 8,708만원)는 각각 △34.42% △2억 3,894만원, △38.6% △4억 9,915만원, △5.91% △10억 5,445만원 감액 편성되어, 주거복지·정비사업 행정지원 기능은 확대하면서 도시계획·건축·공원 분야는 일부 사업을 정비·축소한 구조임.
- 기능별로는 도시관리국 세출 중 정책사업 185억 651만원(약 89.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19억 629만원(약 9.3%), 재무활동 1억 7,268만원(약 0.8%)(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예탁금)) 수준으로, 현장사업 중심의 편성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 주택정책과 : (23억 7,851만원, 19.05% 증)

- 세출예산(안)은 2025년 19억 9,792만원 대비 3억 8,060만원(19.05%) 증액된 23억 7,851만원으로,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 18억 9,575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277만원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10억 7,645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6억 2,858만원), 공동주택 실태조사(5,700만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1억 90만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2,704만원)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역량 강화와 주거취약계층 보호,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이 특징임.

나. 주거정비과 : (1억 6,980만원, 126.30% 증)

- 세출예산(안)은 2025년 7,503만원에서 1억 6,980만원으로 9,477만원 (126.30%) 증액되었으며, ‘균형잡힌 도시개발’ 정책사업 1억 2,771만원, 행정운영경비 1,441만원 등으로 편성됨.
- 재정비 촉진사업 운영(4,732만원)을 통해 상위재정비촉진사업 지원(3,280만원),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744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원(708만원),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8,039만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전지원(2,768만원), 등이 반영되어 장기 추진 중인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다. 도시계획과 : (4억 5,520만원, △34.42%)

- 세출예산(안)은 2025년 6억 9,414만원에서 4억 5,520만원으로 △2억 3,894만원(△34.42%) 감액되었으며, ‘성장도시 발전기반 구축’ 아래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주택재개발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됨.
-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77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1,970만원), 성북구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200만원),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8,079만원),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9,000만원), 지역균형발전개발(2억 1,850만원), 빈집정비사업(2억 650만원) 등이 포함됨.

라. 건축과 : (7억 9,489만원, △38.6% 감)

- 세출예산(안)은 7억 9,489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억 4,218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5억 5,272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12억 9,404만원(일반 4억 8,122만원, 특별 8억 1,282만원)에서 2026년 7억 9,489만원으로 4억 9,915만원(약 △38.6%) 감액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또한 8억 1,282만원에서 5억 5,272만원으로 2억 6,010만원(△32%) 감액 편성됨.
- 세부 사업은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3억 2,108만원),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472만원) 등이 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주거환경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1억 8,133만원, 전년 대비 약 5,269만원 증액), 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1,426만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360만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마을만들기(8,690만원) 등은 생활안전 및 취약주거지 슬럼화 방지에 중점을 둔 신규·확대 사업으로, 도시정비·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으며, 이외에도 행정운영경비(1억 9,274만원) 및 재무활동(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탁금·내부거래지출 1억 7,268만원) 등으로 구성됨.

마. 공원녹지과 : (167억 8,708만원, △5.91%)

- 세출예산(안)은 2025년 178억 4,153만원에서 2026년 167억 8,708만원으로 10억 5,445만원(△5.91%) 감액되었으나, 도시관리국 전체 세출 중 절대 규모는 가장 큰 부서로, 도시공원·녹지·산림·도시농업·수변여가 공간 등 생활환경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정책사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 (153억 6,492만원), **도시농업 기반조성**(2억 1,544만원), **행정운영경비**(12억 67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 중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에는 생활권 공원 확충(21억 1,136만원), 공원정비 및 관리(43억 4,101만원), 녹지정비 및 관리(30억 4,222만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4억 2,118만원), 도심 속 조경 확충·관리 및 수변여가 정원화 등이 포함되어 공원·녹지·산림·수변공간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임.
- **생활권 공원 확충(21억 1,136만원)**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개운산 수국동산·수국길 조성, 개운산 운동장 시설 정비 등이 추진되며, **공원 정비 및 관리(43억 4,101만원)**는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 365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 마을마당·쉼터 정비, 아동 놀이공간 조성, 공원조명등 유지관리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녹지정비 및 관리(30억 4,222만원)**는 재해위험·위험수목 정비, 산림 및 녹지유지관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조림·숲가꾸기, 생태도시숲 조성 등을 포함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4억 2,118만원)**는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와 함께 도심 속 조경 확충·관리 및 수변여가 정원화 사업을 통해 가로수·조경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성북천 정비 및 정원화, 정원지원센터·생태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 가로수·띠녹지 정비, 생태도시숲 조성, 성북천·정릉천 수변여가 공간 정원화, 탄소정원 조성사업 등 기후위기·도시열섬 대응형 녹색인프라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한편 개운산 운동장 시설정비사업(1억 1,000만원)은 2026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생활권 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 이용환경 및 안전성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17억 6,466만원)는 **전년 대비 약 5억 5,607만원 수준의 증액**을 통해 노후 공원시설 정비, 안전사고 예방,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공원 관리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임.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신규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증감	주요 내용 요약
소계		227,040	227,040	
주택 정책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	27,040	27,040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노후 공동주택 등)를 대상으로 단지 방문 방식의 시설·방재·회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도시 계획과	성북 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90,000	90,000	관내 5개 대학 캠퍼스타운 연합체(성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례 네트워크 회의, 공동 창업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RISE 연계 상권 활성화 행사 등 추진
공원 녹지과	개운산 운동장 시설 정비사업	110,000	110,000	개운산근린공원 운동장 내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 및 노후 벤치·배수로 등 정비를 통해 생활권 공원 이용환경 개선

## □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도시관리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액을 조정하는 가운데, 주택정책과·주거정비과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및 정비사업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계획과·건축과·공원녹지과는 일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유지관리·안전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공동주택 관리지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앞서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을 일정 수준 확보·보완한 점은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됨.
- 신규로 편성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개운산 운동장 시설정비’ 등은 각각 공동주택 관리 역량 제고, 대학·지역 연계 도시재생, 생활권 체육·여가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정책 방향성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공원녹지 분야는 기후 위기·도시열섬 대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조성·정비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공원·녹지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비중을 높인 편성으로 보임. 한편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과 건축물 안전 투자 간의 균형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점점이 요구되는 과제로 보임.

[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일반·특별회계) ]

(단위 : 천원)

부서	2026년 세출(계)	주요편성내역 (대표 세부사업 + 금액, ' 25대비 증감)
주택 정책과	2,378,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활성화(공동주택관리 지원 포함 1,889,966, 증414,724)</li> <li>-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피해 지원100,900, 증54,000)</li> </ul>
주거 정비과	169,7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비 촉진사업 운영 (장위·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 47,320, 증2,280)</li> <li>-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정비구역·조합 행정지원 등 80,392, 증73,492)</li> </ul>
도시 계획과	455,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및 관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관리 등 195,587, 증124,065)</li> <li>- 캠퍼스타운·클러스터 조성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 80,787, 증39,065 /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90,000, 증90,000)</li> </ul>
건축과	794,8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건축물 경관개선 지원 (건축물·간판 디자인 개선 등 116,357, △40,542)</li> <li>-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현장 안전점검·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등 181,333, 증52,691)</li> </ul>
공원 녹지과	16,787,0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변여가 공간 정원화 (성북천 산책로 주변 정원·화단 조성 등 1,711,077, △215,118)</li> <li>- 성북천 정비 및 관리 (성북천변 녹지·제방부 유지관리 283,760, △104,254)</li> </ul>

## 6. 검토결과

-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총액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복지, 정비사업 행정지원, 공원·녹지 및 도시 안전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동 예산(안)은 일반회계(구비)를 기본 재원으로 하면서 공원·녹지, 도시농업, 안전관리 등 여러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회계·기금 재원을 병행 활용하는 구조인바, 향후 중기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구비와 외부재원 간 재원 구조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의 예산편성과 의결이 관련 법령·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의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sup>1)</sup>와 「지방재정법」 제36조<sup>2)</sup>, 제36조의2<sup>3)</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sup>4)</sup>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1)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2)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3)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 4)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 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